


보도설명자료	보도시점		자료배포일	매수
	'18년 4월 16일		'18. 4. 16	2
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<small>KOREA RESOURCE RECYCLING ENERGY MUTUAL AID ASSOCIATION</small>	담당자	기술지원팀장 한인성 대외협력팀장 김정훈		
	연락처	02) 718-7900		

- SBS CNBC 뉴스['18.4.13] 보도 설명 자료 -
 ◆ 2018년 4월 13일 SBS CNBC에 보도된 「정부·지자체, 폐비닐 소각 관리 소홀...다이옥신에 무방비 노출」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 소각업체 입장을 설명합니다.

□ **보도 내용**

- ①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진 폐비닐 처리과정 깜깜이로 진행
- ② 오염된 폐비닐을 민간 소각장들이 법정기준인 850℃ 이상 온도를 유지하면서 태웠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됨
- ③ 폐비닐 처리 시 적정 처리 온도 850℃ 이상을 맞추는지 관리 감독 부재
- ④ 민간 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사업장 교육 등 관리가 전무

□ **설명 내용**

<①에 대하여>

-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게 수집·운반 후 소각 처분하는 자는 폐기물의 인수·인계 내역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(올바로시스템)”에 입력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폐기물의 발생량부터 마지막 처리단계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.

<②에 대하여>

- 폐기물(폐비닐류 포함) 소각 처분 시 투입된 폐기물의 완전연소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소각로 법정

온도인 850℃ 준수여부는 소각로 출구온도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 환경공단에 설치된 굴뚝자동측정시스템(TMS)을 통해서 실시간 전송되고 있기 때문에 850℃ 이하로는 소각로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.

- 또한 850℃를 준수하여 소각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기록계를 설치하여 그 내용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③에 대하여>

- 폐기물(폐비닐류 포함) 소각장의 경우 법정온도 850℃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사를 정부 지정 검사기관으로부터 3년 단위로 측정을 받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,
- 지방자치단체, 지방환경청, 민·관합동점검단, 특별점검반 등으로부터 수시 관리·감독을 받고 있으며, 많게는 1년에 26회까지 점검을 나오는 경우도 있어 만약 이러한 검사와 점검과정에서 850℃ 법정온도 미 준수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 등의 사유가 발견될 시 최고 허가취소 또는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<④에 대하여>

- 민간 소각장에서는 법정 기준치 이내로 다이옥신 배출을 최소화하고자 지정폐기물 등 다이옥신 발생 우려가 높은 폐기물의 경우 1,100℃ 이상 고온 소각으로 처분하는 한편 다이옥신 제거를 위해 활성탄을 실시간 분사하여 철저히 제거하고 있으며,
- 특히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거 연2회 의무적으로 다이옥신의 기준치 이내 배출여부를 측정하여 인·허가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, 이를 초과할 경우 최고 사업장 사용 중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
- 아울러 민간 소각장에 근무하는 폐기물처리 담당자는 정부 지정 교육기관으로부터 3년 단위로 소각로 적정 운영 등에 대한 법정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, 이외에도 환경관리인 대상 소양교육 및 정부 순회교육 등을 통해 환경안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.